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 9. 6 선고 2021가단13157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이석재, 서재옥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재선, 문효정

변 론 종 결 2022. 6. 21.

판 결 선 고 2022. 9. 6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17. 6. 8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8,754,50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8,754,505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C에 대하여 2016. 11. 1.을 기준으로 원금 9,811,345원과 이에 대하여 연 35.8%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, 위 채권에 기초하여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79795호 양수금 소를 제기하였다.

위 법원은 2017. 9. 20. ‘C은 원고에게 24,803,646원과 그 중 9,811,345원에 대하여 2017. 4. 19.부터 갚는 날까지 연 35.8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’는 판결(이하 ‘이 사건 관련 판결’이라 하고, 그 소송을 ‘이 사건 관련 소송’이라 한다)을 선고하였고, 이는 2017. 10. 11. 확정되었다.

나. C의 모친인 망 D(이하 ‘망인’)는 2017. 5. 26. 사망하였고, 망인의 상속인들인 자녀 C과 피고는 2017. 6. 8.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)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내용으로 된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분할협의’라 한다.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으로는 그 일자가 2017. 5. 26.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이 사건 분할협의 서면이 작성된 일자인 2017. 6. 8.을 기준으로 한다)를 하였다.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2017. 6. 8.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금을 기준으로 E은행에 2,686,000원,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4,552,000원, 원고에 9,811,345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~6호증의 기재,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장,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, 이 법원의 F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7. 6. 8.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.

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원고가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관하여 그 취소원인을 2017. 6. 8.경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본안에 관한 판단

가. 채권자취소권의 행사

1)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,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,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(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).

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, C은 별다른 재산 없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원인인 양수금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7. 6. 8.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1/2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,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 C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,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.

따라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1/2 지분에 관하여 행해진 이 사건 분할협의를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.

2) 피고는, 이 사건 관련 소송은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에 선고된 것이어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과 피고로서는 원고의

양수금채권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,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소송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어 그 판결이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인 2017. 9. 20.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, 위 판결의 원인이 되는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점,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,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 점(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), C과 피고가 형제 관계인 점에 비추어 보면,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과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나.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

1)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6. 8.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2017. 6. 23. 제3자인 지근영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,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.

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, 갑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, 같은 층에 위치한 부동산이 2020년 4월경 74,500,000원에 거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1/2 지분의 가액은 적어도 37,250,000원(= 74,500,000원 × 1/2) 정도일 것으로 추인되고, 이 사건 관련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(피보전채권)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. 6. 21.을 기준으로 42,981,837원(= 24,803,646원 + 9,811,345원에 대한

2017. 4. 19.부터 2022. 6. 21.까지 연 35.8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8,178,191원, 기간식으로 계산)임은 계산상 분명한데, 원고는 이들 금액보다 적은 28,754,505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와 그에 따른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1), 이 사건 분할협의를 28,754,50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.

2) 피고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7년 이상 망인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집안의 대, 소사를 책임지는 등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여 그 기여 정도가 약 80%에 이르므로, 가액배상의 범위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의 위 기여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 을1호증의 1~5, 을2호증의 1, 2,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, 이 사건 분할협의를 당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 협의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,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다. 소결론

사해행위취소로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17. 6. 8.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28,754,50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8,754,505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.

판사 최승준

부동산 목록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부산광역시 남구 동[도로명주소] 부산광역시 남구

재42610호 블록조 슬래브지붕2층 공동주택

1층 및 2층 각 937.99㎡, 계단 65.45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1. 부산광역시 남구 대 2052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2층 호 블록조 54.88㎡

(대지권의 표시)

1 소유권대지권 20510분의 569 ㎡.

1) 원고는 피보전채권액에서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망인에 대한 병원 치료비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와 그에 따른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다.